



광 주 지 방 법 원

제 2 - 2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 2024구합1235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원 고 A
소송대리인 변호사 임○○
피 고 ○○광역시 ○○구청장
변 론 종 결 2025. 3. 21.
판 결 선 고 2025. 5. 2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가 2023. 10. 5.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78,420,470원, 농어촌특별세 23,718,7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.

이 유

1. 처분의 경위



가.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(대표이사 원고, 이하 'B')은 2020. 7. 7. 설립된 법인(보통주 1만 주(주당 액면가액 1,000원), 주주명부상 원고: 3,400주(지분율 34%), C: 3,300주, D: 3,300주로 등재됨)으로, 2021. 7. 7. 보통주 14만 주, 같은 달 16. 보통주 5만 주를 각 증자하여 발행주식 총수 20만 주가 되었다.

나. 피고는 2023. 7. 5.부터 B에 대한 세무조사를 거쳐, 원고가 유상증자된 위 B 주식 19만 주(이하, '쟁점주식')를 취득함으로써 아래 표와 같이 B의 주식 193,400주(지분율 96.7%)를 소유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되었으나 그 취득세 등을 신고·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, 2023. 10. 5. 원고에게 취득세 278,420,470원¹⁾, 농어촌특별세 23,718,760원²⁾ 합계 302,139,230원의 부과처분(이하, '이 사건 처분')을 하였다.

[B의 2021년 주식 변동상황] (단위 : 주, %), <청구인은 원고임>

주주명	기초		변동상황 증가주식수 (유상증자)	기말		지배 주주와의 관계
	주식수	지분율		주식수	지분율	
청구인	3,400	34	190,000 (쟁점주식)	193,400	96.7	본인
C	3,300	33	-	3,300	1.65	기타
D	3,300	33	-	3,300	1.65	기타
합 계	10,000	100	190,000	200,000	100	-

다.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, 조세심판원은 2024. 3. 5. 이를 기각하였다.

1)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가액 10,483,840,492원에 원고의 지분율 96.7%를 곱하여 산정한 10,137,873,75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 202,757,470원에 신고불성실가산세 40,551,490원과 납부지연가산세 35,111,510원을 합한 금액임

2) 산출세액 20,275,740원에 납부지연가산세 3,443,020원을 합산한 금액임.

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2, 3호증, 을 제1, 2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관계 법령

별지 기재와 같다.

3. 원고의 주장 요지

원고가 B의 쟁점주식을 전부 취득한 것이 아니라 쟁점주식 19만 주 중 절반인 95,000주를 원고가, 나머지 95,000주를 E가 각 취득하였고, 그에 따라 2021. 7. 16. 기준 B의 총 발행주식 2만 주 중 원고의 보유 주식수는 98,400주(지분율 49.2%)에 불과하므로, 이와 달리 쟁점주식 19만 주 전부를 원고가 취득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.

4.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

피고가 B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가기 직전인 2023. 7. 3. F세무회계사무소를 통해 전달받은 B의 쟁점주식 유상증자와 관련된 2021년도 계정별원장(계정과목: '보통예금', '주·임·종 단기대여금', '자본금')(을 제3, 4, 5호증)에는 다음과 같이 분류, 기재되어 있고,

계 정 별 원 장

2021.01.01 ~ 2021.12.31

회사명: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B

계정과목 : [103] 보통예금

날짜	적요란	코드	거래처	차변	대변	잔액
07-16	자본증자액의 보통예입			190,000,000		297,130,046
07-16	G 주식	98000	H	200,000,000		497,130,046
07-16	자본증자액				190,000,000	307,130,046

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5-05-25

회사명: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B

과목 : [134] 주.임.종단기대여금

날짜	적요란	코드	거래처	차변	대변	잔액
07-16	단기채권에서대체(법인)	00107	대표자	190,000,000		541,135,552

회사명: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B

계정과목 : [331] 자본금

날짜	적요란	코드	거래처	차변	대변	잔액
	전기이월				10,000,000	10,000,000
07-16	자본증자액의 보통예입				190,000,000	200,000,000
	[월 계]				190,000,000	
	[누 계]				200,000,000	

2022. 3. 31. 세무당국에 신고된 B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(을제2호증)에 기재된 주주(원고, C, D)의 주식변동상황은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는바,

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

1. 제출법인 기본사항

① 법인명: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B ② 사업자등록번호: ③ 대표자명: ④ 상장변경일: ⑤ 합병·분할일: ⑥ 사업년도: 2021.01.01 ~ 2021.12.31 ⑦ 주권상장여부: ⑧ 무액면주식 발행여부: 2.부

2. 자본금(출자금) 변동상황

⑧ 일자	⑨ 원인코드	증가(감소)한 주식의 내용				⑩ 증(감)소 자본금	⑧ 일자	⑨ 원인코드	증가(감소)한 주식의 내용				⑩ 증(감)소 자본금
		⑪ 종류	⑫ 주식수(출자좌수)	⑬ 주당액면가액	⑭ 주당발행(인수)가액				⑪ 종류	⑫ 주식수(출자좌수)	⑬ 주당액면가액	⑭ 주당발행(인수)가액	
⑮ 기초		보통주	10,000			10,000,000							
		우선주		1,000									
2021.07.07	01	보통주	140,000	1,000	1,000	140,000,000							
2021.07.16	01	보통주	50,000	1,000	1,000	50,000,000							
							⑮ 기말		보통주	200,000			
									우선주		1,000		200,000,000

3. 자본금(출자금) 세부 변동내역

⑮ 일련번호	주주·출자자			기초	변동상황(주식수·출자좌수)														기말	⑯ 지배주주와의 관계	
	⑮ 구분	⑮ 성명(법인명)	⑮ 주민등록번호(사업자번호)		증가주식수(출자좌수)							감소주식수(출자좌수)									
				⑮ 거주지코드	⑮ 주식수(출자좌수)	⑮ 지분율	⑮ 양상증자	⑮ 무상증자	⑮ 상속	⑮ 증여	⑮ 전환사채 등 출자잔환	⑮ 명의신탁 등 신탁잔환	⑮ 기타	⑮ 양도	⑮ 상속	⑮ 증여	⑮ 감자	⑮ 명의신탁 등 신탁잔환	⑮ 기타	⑮ 주식수(출자좌수)	⑮ 지분율
1	합계				10,000	100		190,000												200,000	100
2	계정인수																				
3	개입			대한민국	KR	3,400	34.00		190,000											193,400	96.70
4	개입			대한민국	KR	3,300	33.00													3,300	1.65
5	개입			대한민국	KR	3,300	33.00													3,300	1.65

지배주주와의 관계: 본 안(00) 배주자(01) 재(02) 부 모(03) 형제·자매(04) 손(05) 조부 모(06) 02-06의배우자(07) 01-07이외의 친족(08) 기타(09) 특수관계법안(10)

4. 주식발행법인의 자기주식 보유현황: 보유여부 (1) 예 (2) 부

⑮ 자기주식수(주): ⑮ 소각목적 자기주식수: ⑮ 소각목적 외 자기주식수: 2022년 03월 31일

법안세법, 제 60조 및 제 119조, 같은법 시행령 제 97조 · 제 16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합니다.

OO 세무서장 귀하 을 제2호증 대표자 (서명 또는 인)



위 2021년도 계정별원장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기재 내용 등을 종합하면, B이 유상증자한 쟁점주식 19만 주 전부를 원고가 취득함으로써 2021. 7. 16. 기준 B의 총 발행주식 2만 주 중 193,400주를 원고가 보유(지분율 96.7%),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, 이와 달리 B이 뒤늦게 수정신고하면서 제출한 2021년도 계정별원장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(갑 제4, 5, 6, 7, 8, 10호증 및 갑 9호증의 1, 2)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(한편, 원고는 원고와 E가 쟁점주식 19만 주의 절반씩(각 95,000주)을 인수·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, 쟁점주식을 증자할 무렵에 E가 실제로 위 주식인수대금 9,500만 원을 출자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어, 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).

따라서 원고를 B의 과점주주로 보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.

5. 결론

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이○○

판사 이○○

판사 김○○



관계 법령

■ 지방세기본법

제46조 (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)

법인(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)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(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)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. 다만,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(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(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)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.

2.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(이하 "과점주주"라 한다)

■ 지방세법

제7조(납세의무자 등)

-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점주주(이하 "과점주주"라 한다)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(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·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)을 취득(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)한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.



제10조의6(취득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)

- ④ 제7조 제5항 전단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의 취득당시가액은 해당 법인의 결산서와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당시가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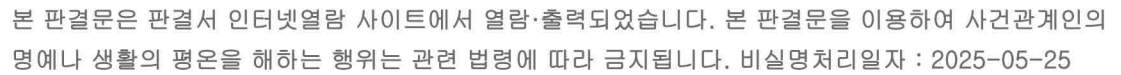
제20조(신고 및 납부)

-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(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)부터 60일 [무상취득(상속은 제외한다)으로 인한 경우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,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,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(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)]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, 제13조의2, 제13조의3, 제14조 및 제15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.

제21조 (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)

-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7까지,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, 제13조의2, 제13조의3,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(이하 이 장에서 "산출세액"이라 한다)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.

1.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



제11조 (과점주주의 취득 등)

- 8 -